

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원의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의8 제4항, 제101조의9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02월 27일
군 포 시 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정비사업 명칭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고
신규	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	금정역세권1구역	금정동 727번지 일대	51,417.6	-

3. 사업시행예정일 :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

○ 정비사업 시행기간 : 2025년 ~ 2035년

4. 계획인구 및 세대수 : 2,760인(1,150세대)

※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따른 계획인구 및 세대수로, 정비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(계획인구는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(2030년)의 가구당 인구 2.4인 적용)

5. 사업시행자 지정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코리아신탁주식회사(대표 : 이유청) ☎ 02-3430-2000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, 10층

6.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(법 제19조)

가. 행위제한 :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(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 필요)

7. 지형도면 : 붙임 참고